



제389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보복행위 금지 포함 등>

■ 류호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318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보복행위 금지 포함 등>

■ 박 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329호)

<“학교폭력” 정의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등>

■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403호)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등>

■ 이채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604호)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및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 임종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671호)

2021. 7.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재 유

목 차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 정의원 대표발의】

I . 제안경위 3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I . 제안경위 5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I . 제안경위 6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I . 제안경위 8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Ⅲ. 검토의견 10

1. “학교폭력”의 정의 수정 및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
(권인숙의원안, 이채익의원안, 임종성의원안) 10
2.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안처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 신설 및 학교폭력 실태조사 항목에 “사이버 학교폭력” 포함
(이채익의원안) 18
3.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전문인력 배치(임종성의원안) 24
4.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채익의원안 및 임종성의원안) 29
5.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보복행위 등 금지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 32
6. 가해학생의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에 대한 조치의 병과 또는 가중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 36
7.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조치) 특별교육이수 의무화(박정의원안) 및 특별교
육 이수의 외부위탁교육 포함(권인숙의원안) 41

【참고자료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44

【참고자료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주요 내용 45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류호정 · 심상정 · 김홍걸 · 이은주 · 배진교 · 장혜영
이상헌 · 강민정 · 강은미 · 전용기 · 장경태 의원
(11인)
2. 발의연월일 : 2021. 4. 6.
3. 회부연월일 : 2021.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속적이지 않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로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육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학생, 신고학생 외에 학교의 여러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박정의원 대표발의】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 정 · 이상현 · 이병훈 · 허종식 · 이규민 · 고용진

유정주 · 오영환 · 이상직 · 어기구 · 임오경 의원

(11인)

2. 발의연월일 : 2021. 4. 6.

3. 회부연월일 : 2021. 4.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인숙 · 박찬대 · 윤미향 · 윤영덕 · 이탄희 · 주철현
서동용 · 유기홍 · 강민정 · 강득구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4. 12.
3. 회부연월일 : 2021. 4.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성적 정보 요구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며,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채익 · 백종현 · 정희용 · 장제원 · 김기현 · 이명수
권명호 · 송재호 · 정동만 · 김 웅 의원(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4. 20.
3. 회부연월일 : 2021.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괄하고,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이 실태조사와 사안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응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제6조의2·제11조제8항 후단 및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제2조제1호·제20조의3).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성 · 강선우 · 기동민 · 김윤덕 · 민형배 · 송갑석

송옥주 · 안호영 · 윤준병 · 정춘숙 · 최종윤 의원

(11인)

2. 발의연월일 : 2021. 4. 22.

3. 회부연월일 : 2021.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유형별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의 사이버폭력은 2016년에 9.1%에서 2020년 12.3%로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원격수업의 비중이 늘어난 2020년의 경우 2019년도에 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폭력(3.4% 증가)과 집단 따돌림(2.8% 증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대면·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0조의3, 제11조의2제4항 및 제15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학교폭력”의 정의 수정 및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 (권인숙의원안, 이채익의원안, 임종성의원안)

권인숙의원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2조제1호),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수정하며(안 제2조제1호의3),

이채익의원안 및 임종성의원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1호의2), “학교폭력”의 정의(제2조제1호)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며,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에 대한 자구를 함께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현 행	권인숙의원안	이채익의원안	임종성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 ----	제2조(정의) ----- ----- ----- ----- ----	제2조(정의) ----- ----- ----- ----- ----
1. “학교폭력”이 란 학교 내외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유인, 명	1. ----- ----- ----- ----- ----- ----- -----	1. ----- ----- ----- ----- ----- ----- -----	1. ----- ----- ----- ----- ----- ----- -----

현행	권인숙의원안	이채익의원안	임종성의원안
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 등에 의하여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학교폭력 등에 의하여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학교폭력 등에 의하여
1의2. (생략)	1의2. (현행과 같)	1의2. “사이버 학교 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사이버 학교 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현행 제1호	1의3.(현행 제1호

현행	개정안	권인숙의원안	이채익의원안	임종성의원안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음)	1의3. -----정 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 ----- ----- ----- ----- -----.	의2와 같음) 1의4.(현행 제1호의3과 같음)	의2와 같음) 1의4.(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5. (생략)	2. ~5. (현행과 같음)	2. ~5. (현행과 같음)	2. ~5. (현행과 같음)	2. ~5.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의한----- ----- ----- -----.	제2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의한----- ----- ----- -----.	제2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의한----- ----- ----- -----.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5조의2 신설)¹⁾된 바 있음.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으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조제1호 역시 “학교폭력”의 정의 규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1) 권인숙의원안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 등”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란·폭력 정보와 관련한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교육부는 “음란·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개정할 경우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이 구체화 될 수는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비하여 그 행위의 범위가 음란·폭력 정보의 ‘요구 및 제공’으로 축소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사이버 따돌림”의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권인숙의원안**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2)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이채익의원안** 및 **임종성의원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용어 정의 규정을 별도의 호로 신설하여 현행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학교폭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³⁾을 반영함과 아울러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사이버 학교폭력은 ①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크며, ② 언어, 다양한 사진과 영상 등이 그 매개도구가 될 수 있고, ③ 은밀하고 발견하기 어려우며, ④ 사이버폭력의 기록(흔적)이 복제·확진되는 지속성이 있고, ⑤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후유증을 동반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음.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21. 1. 21.)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것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이버폭력(3.4%p)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피해유형별 응답률 >

구분*	2013년 1차	2014년 1차	2015년 1차	2016년 1차	2017년 1차	2018년 1차	2019년 1차	2020년	증감 (%p)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33.6	△2.0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26.0	2.8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6.7	△2.0
신체폭력(%)	11.7	11.5	11.9	12.1	11.7	10.0	8.6	7.9	△0.7
사이버폭력(%)	9.1	9.3	9.2	9.1	9.8	10.8	8.9	12.3	3.4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5.4	△0.9
성폭력(%)	3.3	3.8	4.2	4.5	5.1	5.2	3.9	3.7	△0.2
강요(%)	6.1	4.7	4.2	4.3	4.0	3.9	4.9	4.4	△0.5

* 피해유형별 중복응답 가능, 중복응답 건수 기준 비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21. 1. 21

이처럼 스마트폰의 보급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의 확대에 의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학교폭력 금지를 학교폭력예방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⁴⁾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채익의

4)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3. 10.

다만, 현행법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과의 관계, 다시 말해 “학교 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을 “사이버 폭력”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현행 “학교 폭력” 중 “사이버 폭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정의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이채익의원안·임종성의원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1. ----- ----- ----- ----- ----- <u>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u>
<신설>		1의2.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

현행	이채익의원안·임종성의원안	수정의견
1의2. “<u>따돌림</u>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u>사이버 따돌림</u>”이란 <u>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u>를 말한다.	<u>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u> 1의3. (현행 1호의2와 같음) 1의4. (현행 1호의3와 같음)	<u>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u> 1의3. (현행 1호의2와 같음) 1의4. “<u>사이버 따돌림</u>”이란 <u>정보통신망을</u> ----- ----- ----- ----- ----- ----- ----- ----- ----- -----.

참고로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729호, 2021. 3. 12.)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채익의원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사안 처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학교의 장이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6조의2),

현행	이재익의원안
<신설>	제6조의2(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등)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사안처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의 장이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략)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⑧ ----- ----- ----- ----- ----- ----- -----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⑨ ~ ⑫ (생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5)(【참고자료1】참조)가 개최(2021. 4. 15.)되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이 심의·의결된 바 있는데6),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방안으로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층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기로 하였음.

아울러,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중심)를 지정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6) 교육부 보도자료, 2021. 4. 15.

< Wee 프로젝트 구축 현황 >

구분	현황	설치단위	기 능
Wee 클래스 (1차 안전망)	7,631개	단위학교	· 부적응 학생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Wee 센터 (2차 안전망)	233개소	교육지원청	·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Wee 스쿨 (3차 안전망)	15개교	시도교육청	· 장기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에게 교육, 치유 서비스 제공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한 사이버 폭력 대응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음.

개정안 제6조의2와 제11조제8항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사안 처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과 아울러,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실익 및 필요성에 대한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법 제11

조제8항⁷⁾에 따라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감이 발표하고 있는바, 학교폭력 실태조사 항목에 ‘사이버 폭력’ 관련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⁸⁾,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임⁹⁾.

한편, 개정안 제6조의2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이고, 오프라인 상의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기보다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국가 차원에서의 공통된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공동사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체계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이어서 개정안 제6조의2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조¹⁰⁾를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예방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8)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1. 1. 21

9) 교육부 보도자료, 2021. 4.15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교육 및 사안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48종)을 운영 중에 있음(【참고자료2】 참조).

<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주요결과표 >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피해 응답율	구분	전체		초		중		고	
	비율(%)	0.9		1.8		0.5		0.2	
	명수(천명)	26.9		19.2		5.8		1.8	
피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성폭력	강요
	전체	33.6	26.0	6.7	7.9	12.3	5.4	3.7	4.4
	초	34.7	26.8	6.3	8.7	10.2	5.6	3.2	4.5
	중	30.2	24.3	7.6	5.4	18.1	5.2	4.8	4.4
	고	32.3	23.8	7.6	7.2	15.4	4.5	4.9	4.3
가해자유형 (%)	구분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학교 다른 학년	다른 학교 학생	잘 모르는 사람	기타		
	전체	50.9	26.1	6.6	4.1	2.0	10.3		
	초	52.7	24.3	7.3	3.3	2.0	10.4		
	중	46.8	30.5	4.5	6.0	2.0	10.2		
	고	45.5	30.6	4.8	6.7	2.0	10.4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피해장소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학교 안 (64.2)							학교 밖 (28.3)						기타
		교실안	복도	운동장	화장실	특별실	가숙사	급식실 매점등	놀이터	사이버 공간	학원 주변	학교밖 체험	집, 집근처	PC 노래방	
	전체	32.5	11.5	7.4	3.4	1.6	0.5	7.3	6.6	9.2	3.7	4.1	3.9	0.8	7.4
	초	32.1	11.0	8.9	3.4	1.4	0.2	6.2	8.3	6.6	4.4	4.5	4.6	0.4	8.0
	중	33.0	12.9	4.2	3.3	1.7	0.4	9.8	2.7	16.5	2.1	3.1	2.4	1.9	6.0
	고	35.4	12.2	2.7	3.3	2.6	3.5	11.1	2.5	13.1	1.4	2.7	2.0	1.3	6.0
피해시간 (%) (복수응답, 건수기준)	구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하교 이후	수업 시간	하교 시간	학교밖 체험	등교 시간	방과후 수업	기타					
	전체	36.0	15.1	16.0	7.3	5.3	4.4	3.2	2.4	10.3					
	초	36.5	13.4	17.5	5.6	6.0	4.5	3.2	3.0	10.3					
	중	35.1	18.5	12.9	9.9	3.9	4.4	3.1	1.2	11.0					
	고	34.5	20.0	11.3	14.1	3.3	3.2	3.3	1.7	8.6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 (%)	구분	보호자나 친척	학교 선생님	친구 선·후배	117 신고센터	학교상담실 선생님	학교전담 경찰관 경찰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밖 기관	미신고					
	전체	주위에 알려거나 신고 (82.4)								17.6					
		45.3	23.0	9.3	1.4	1.6	0.5	0.3	1.0						
	초	48.8	20.7	7.4	1.6	1.0	0.3	0.1	1.2	18.9					
	중	38.2	27.4	13.3	1.2	3.1	0.6	0.6	0.4	15.2					
	고	31.3	33.1	16.4	1.1	3.8	1.2	0.5	0.6	12.0					
피해 미신고 이유 (%)	구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전체	28.5	14.8	23.8	18.6	11.4	2.9								
	초	29.8	15.6	24.6	15.9	11.1	3.0								
	중	25.8	12.9	21.3	25.3	12.4	2.3								
	고	20.7	8.9	21.1	35.2	11.3	2.8								

자료: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1. 1. 21

3.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전문인력 배치(임종성의원안)

임종성의원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0조의3 신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가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7조),

학교폭력 조사·상담 기관 및 단체에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현행	임종성의원안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 ----- ----- ----- -----제10조의3에 따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제12조----- -----

현행	임종성의원안
<u><신설></u>	<u>제1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을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u> <u>②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과 최신 동향 및 대응 정책 연구</u> <u>2.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u> <u>3.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u> <u>4.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가이드라인의 제작·보급</u> <u>5. 그 밖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교육부장관은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임종성의원안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u>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1) 개정안 제10조의3은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을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이버 학교폭력이 새로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 및 사안 처리 지원이 미흡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오프라인 상의 “학교폭력”과 구분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2) 현행법 제11조의2제2항¹¹⁾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1조의2제4항은 교육감 및 위탁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사이버 학교폭력의 조사·상담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위탁 기관 또는 단체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최근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조사·상담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¹²⁾.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2021. 4.15)에 따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표준연수안을 제작·보급하고,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연수를 계획하고 있음.

(3) 개정안 제7조제3호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¹³⁾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추가하고 있는바, 이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특수성 및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생각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개정안 제7조제3호에 따른 경우 교육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는 업무적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동 센터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현행법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안 제10조의3(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등)을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에 관련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확대·수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사이버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인력의 배치(개정안 제11조의2)와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의 온·오프라인 연계 특성상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인력”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4.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 실시(이채익의원안 및 임종성의원안)

이채익의원안 및 임종성의원안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직원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이채익의원안	임종성의원안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 ----- ----- ----- ----- <u>이 경우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② ----- ----- ----- ----- ----- ----- <u>이 경우 학부모에 대하여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두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채익의원안은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임종성의원안은 교직원을 제외한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2021. 4. 15.)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에 자녀의 스마트기기 사용지도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계획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에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사이버 폭력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이고, 오프라인 상의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에 사이버 폭력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보복행위 등을 포함하여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 32 –

현행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
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2. ----- ----- ----- ----- <u>보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u> ----- -	2. ----- ----- ----- ----- <u>금지. 이 경우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u>	2. ----- ----- ----- ----- <u>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u> -----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3. ~ 9.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14)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보복행위 등의 범위나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학생이나 학부모 및 교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보복행위 등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¹⁵⁾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보복행위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교원 등의 이해를 돕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

개정안의 문구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¹⁶⁾ 정의 규정에 따라 “정보

15)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3. 10. p.9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702호,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729호)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6. 가해학생의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에 대한 조치의 병과 또는 가중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이나 피해학생 이외의 학생 등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
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u>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u>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u><신설></u>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 ----- ----- ----- ----- <u>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 ----- ----- -----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 ----- ----- ----- ----- <u>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 ----- ----- ----- -----.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 ----- ----- ----- ----- <u>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 ----- ----- ----- -----.
	1. <u>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u>	1. <u>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인 경우</u>	1. <u>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u>

현행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
<신설>	2. 동일한 피해 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u>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u>	2. <u>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u>	2. 피해학생, 신고·고발 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 대한 <u>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 행위일 경우</u>
③ ~ ⑫ (생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17)은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제17조제2항18)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류호정의원안, 박정의원안, 권인숙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행사의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해학생의 반복적·지속적인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생략)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¹⁹⁾.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u>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u> 시행령제 14조 제 5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u>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3점					<u>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u> 시행령제 14조 제 5항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u>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육환경변화	교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19)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 189호, 국회입법조사처, p.13 참조

“지속적인 가해행위의 의미를 피해학생 보호 강화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2항을 개정하여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가해학생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²⁰⁾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²¹⁾(교육부 고시 제2020-227호, 2020. 5. 1.)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및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 병과 포함)를 요청할 수 있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이외의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령 등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2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별 세부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따라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이외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현행 입법체계(법률-시행령-교육부 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판단하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하도록 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관련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가해학생이 기존의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조치 수준을 가중하거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지속성 또는 고의성만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하는 것은 현행 가해학생 조치결정 세부기준과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218호)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특별교육이수 의무화(박정의원안) 및 특별교육 이수예외 외부위탁교육 포함(권인숙의원안)

현행	박정희원안	권인숙의원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②(생략)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u>특별교육</u> 을 이수하거나 <u>심리치료</u> 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서 신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u>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u>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u>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한다.</u>
④ ~ ⑫(생략)	④ ~ ⑫(현행과 같음)	④ ~ ⑫(현행과 같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박정의원안은 가해학생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²²⁾는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박정의원안은 가해학생이 현행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치(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한 조치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중에서 “특별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권인숙의원안**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위탁교육도 특별교육 이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특별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위탁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729호)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자료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사항 >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 (구성) 국무총리(공동위원장) 포함 당연직 위원 11명, 위촉직 위원 8명
(위촉권자 : 대통령)으로 총 19명

- (당연직)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 분야별 전문가 등 총 8명

-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개최) 반기별 1회 개최 원칙이나,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가능
- (개의/의결) 위원장이 회의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참고자료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개 요

- (목적) 온·오프라인상의 학교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함양
- (특징) 교사가 수업 시간에 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 지도안, 학생 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
 - ※ 안전교육,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장애이해교육 등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
- (종수) 총 134종* ('21.2월 기준)
 - * 어울림 프로그램(86종),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48종)
 -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http://doran.edunet.net>),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topbullying.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 구성 체계(학생용)

- (기본 프로그램)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심층 프로그램) 언어나 비언어 및 또래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유형 중심으로 구성
- (교과연계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역량과의 연계성이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등용(중,고)으로 연차적 개발
 - ※ 연도별 개발 계획 : ('19) 국어, 도덕, 사회 → ('20) 기술·가정, 체육, 영어 → ('21) 진로, 한문
 - ※ 체육, 영어, 기술·가정 교과연계 프로그램은 '21.2월 탑재 예정

구분	기본프로그램 (역량 중심)	심층프로그램 (문제유형 중심)	교과연계 프로그램	자유학기(학년)연 계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 (86종)	○ (6대 역량)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 (학교급) 초저(1-2), 초중(3-4), 초고(5-6), 중, 고	○ (4개 유형) 신체·물리,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 (학교급) 초저(1-3), 초고(4-6), 중등용	○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체육, 영어, 기술·가정 ○ (고등학교) 국어, 통합사회, 체육, 영어, 기술·가정	○ 주제선택 활동형 - 주제형, 교과연계형(국어, 사회, 도덕 교과) ○ 동아리 활동 연계형 ○ (학교급) 중학교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48종)	○ (8대 역량) 사이버 공감, 사이버 의사소통, 사이버 자기존중감, 인터넷 윤리의식, 사이버 자기조절, 사이버 감정조절, 사이버상 갈등관리, 사이버폭력인식대처 ○ (학교급) 초저(1-3), 초고(4-6), 중, 고	○ (6개 유형)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유포 ○ (학교급) 초등, 중등	○ (중학교) 국어, 도덕, 사회, 체육, 영어, 기술·가정 ○ (고등학교) 국어, 윤리, 통합사회, 체육, 영어, 기술·가정	-